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79
----------	----

제출연월일 : 2015. 06. 17(수)
제 출 자 : 박종욱 대표의원
찬 성 자 : 이범연, 함명섭,
장문혁, 임영순,
박찬원 의원

1. 주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심사기간은 2015년 06월 22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가. 평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조례안 심사
 - 가.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나.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다.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 라.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 마.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바.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차.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활동기간

- 2015년 0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4. 구성

- 이범연 의원, 함명섭 의원, 장문혁의원, 임영순 의원, 박찬원 의원

5. 운영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고
2015. 06.22 (월)	제1차 조례특위 (13:30)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조례안 심사 가.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다.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라.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마.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바.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